

<p>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시행 2018. 6. 20] [대통령령 제28928호, 2018. 5. 29, 일부개정]</p>	<p>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시행 2020. 3. 3] [대통령령 제30513호, 2020. 3. 3, 일부개정]</p>
<p>제2조(동물실험시설)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동물실험시설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·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</p>	<p>1.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가.나. (생략)</p>	<p>가.나. (현행과 같음)</p>
<p>다. 「약사법」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(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<u>의약품</u>은 제외한다)</p>	<p>다.----- ----- ----- <u>의약품 또는 동물용 의약외품</u>은 -----</p>
<p>라.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기기(같은 법 <u>제39조에 따른</u> 동물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)</p>	<p>라.----- ----- <u>제46조에 따른</u> ----- -----</p>
<p>마.바. (생략)</p>	<p>마.바. (현행과 같음)</p>
<p>2. ~ 6. (생략)</p>	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<u>제33조제1항에 따른</u>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</p>	<p>제1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--- <u>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</u> ----- -----.</p>